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8. 23 선고 2021가단504967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

담당변호사 육삼신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8. 23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. 13.부터 2021. 2. 11.까지 연 6%, 그 다음날부터 2021. 4. 13.까지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들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12 지분에 관하여 2018. 6. 7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5,666,66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3. 피고 B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,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C이 지급할 돈의 범위 내에서 5,666,6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김진영

별지